

용인시 문화상 조례

제정	1984. 2. 15	조례 제1842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1996. 7. 6	조례 제 48호
	1998. 7. 3	조례 제 127호(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)
	2005. 10. 5	조례 제 629호
일부개정	2011. 5. 13	조례 제1148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5. 5. 18	조례 제1457호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용인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명칭과 부문 등) ① 용인시 문화상(이하 “문화상”이라 한다)의 수상 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학술부문 1명
2. 문화부문 1명
3. 예술부문 1명
4. 교육부문 1명
5. 지역사회봉사부문 1명
6. 체육부문 1명
7. 관광부문 1명

② 수상은 제1항의 각 부문의 수상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되,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8]

제3조(시기) 문화상은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 5. 18>

[제목개정 2015. 5. 18]

제4조(대상) 수상대상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공고일 현재 3년 이상

용인시에 거주하거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용인시인 사람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8]

제5조(추천) 구청장, 읍장·면장·동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 기관장, 단체장,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8]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) 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문화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〈개정 2015. 5. 18〉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신설 2015. 5. 18〉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〈신설 2015. 5. 18, 개정 2017. 10. 2〉

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. 〈신설 2015. 5. 18〉

⑤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위촉이 해제된다. 〈신설 2015. 5. 18〉

[제목개정 2015. 5. 18]

제6조의2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록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8]

제6조의3(자료제출 요구 등)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8]

제7조 삭제 <2015. 5. 18>

제8조(간사)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8]

제9조(수당 등)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8. 7. 3, 2005. 10. 5, 2012. 12. 11, 2015. 5. 18>

[제목개정 2015. 5. 18]

제10조(시상)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8]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8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6. 7. 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7. 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용인시 문화상 조례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9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5. 13 조례 제114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

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5. 5. 18 조례 제145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㉔ 까지 생략

㉕ 「용인시 문화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㉖ 부터 ㉘ 까지 생략